

국립전파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알림

1. 관련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나. 전파법 제45조(법률 제21066호)
- 다. 전파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5801호)
- 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2호, 2023.12.8.)
- 마. 기술기준과-1711('26.4.2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2. 위 관련, 우리 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26.4.28.~'26.6.26.)한 바 있습니다.

3. 행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재행정예고 기간: '26.7.7.~'26.7.17.(10일)
- 나. 재행정예고 사항: 특정 기술방식으로 명시된 문구 삭제
- 다. 제출처: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52, imaward@korea.kr)
- ※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

붙임 1. 재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국립전파연구원장



수신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 (주)엘지유플러스, 삼성전자, (주) 에이치시티, (주)디티앤씨, 주식회사 유로핀즈케이씨티엘 용인
센터, 한국에스지에스(주),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

공업연구사

주상임

★공업연구관

임재우

미래전파기술팀 전결 2026. 7. 7.

장

이승용

협조자

시행 기술기준과-2449

(2026. 7. 7.)

접수

우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빛가람동) / <https://www.rra.go.kr>

전화번호 0613384652`

팩스번호 061338

/ imaward@msit.go.kr

/ 대국민 공개